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88 | 2025.06.16 (2025.06.09~2025.06.1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본격 출시 중인 신경망 처리장치(NPU)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경으로 편성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선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5.6.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연기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새로이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개발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조성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문화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며,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

다크패턴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37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의원 등 11인)」,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2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사업 통합설명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산업통상자원부) 8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시행(국토교통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행정안전부) 10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0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2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처)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 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16
-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37인) 16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1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1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17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18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1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의원 등 12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의원 등 11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0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21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7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22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2
•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의원 등 11인)	2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24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24
•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2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25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2인)	25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26
•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0인)	27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8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29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 디지털자산의 본격적인 제도화
- [지적재산권]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로서 ‘연구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에너지·자원] 2025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 [소송]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준거법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거소지법 적용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5. 28. - 2025. 6. 10.)
- [중국] 중국 <에너지법> 시행 및 최근 美中 관세 협의가 주는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기업 소통을 바탕으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 지원 성과 창출
- 산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 대상 간담회도 개최

2025-0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본격 출시 중인 신경망 처리장치(NPU)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추경으로 편성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사업에 대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중요성을 고려하여 올해에만 이번 추경 494억 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실증, 인재 양성 등에 총 2,434억 원을 투자함. 특히, 금번 추경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유망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들이 신경망 처리 장치(NPU)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이라고 요청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되었음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추경 사업은 ①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인프라) 고도화(120억), ②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40억), ③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220억), ④인공지능-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54억), ⑤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기기(디바이스) 인공지능 전환 개발·실증(60억)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①인공지능 컴퓨팅 실증 기반(인프라) 고도화 사업 및 ②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사업, ③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화 적시 지원 사업(제품 제작지원)은 5.29(목)부터 6.30(월)까지 공고를 통해 신규 과제 수행자를 모집 중임

이번 통합설명회는 추경사업을 실제 집행하기 전에 기업들에게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업 전반에 걸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기업들이 과제를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실무적인 소통도 강화할 예정임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합 설명회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 간담회도 함께 진행함. 간담회에는 서버 및 엣지형 신경망 처리 장치(NPU)를 출시하여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참석하여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임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사업 기획은 물론,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가 조기에 상용화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유치된 외국인투자 면적만큼 면적상한 초과 허용

2025-06-12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5.6.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힘

*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 150만평, 도 : 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함.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됨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고 밝힘

산업부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시행

-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체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안 마련
-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 국토교통부 주관, 발주청·시공사 및 레미콘업체 간 사전협의체 운영

2025-06-1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임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건설현장에서 시멘트·모래·자갈 등을 조합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플랜트)로 레미콘 운송시간 절감, 품질제고로 건설안전 강화 기대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24.1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음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 확대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② 예외적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도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함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

②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으로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③ 다른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

③ 국토교통부 주관 사전협의체 운영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사, 레미콘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계획임.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 · 조율할 예정임.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체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2025-06-10 시행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국정기획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위원 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민참여기구의 운영위원 등의 범위에 국민참여·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6-13 시행
---------	----------------------------------	---------------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전압의 허용오차 기준 중 220볼트의 표준전압에 대해서 종전에는 220볼트의 상하로 13볼트 이내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20볼트의 상하로 22볼트 이내로 변경하여 전압 유지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전력 설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5-06-10 시행
-------	-----------------------------------	---------------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공급받을 예비입주자가 없는 이른바 무순위 청약 대상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약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등에 거주할 것을 청약 요건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및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5-06-10 시행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이도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정청 자체적으로 전자문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민의 서류 제출 의무를 간소화하여 민원 신청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또는 허가증 갱신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원본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변경하거나 제조업 허가증 또는 위탁판매제조 신고증을 갱신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각 원본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13. ~2025.06.16.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기하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수입부과금 인하 폭을 축소하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톤당 20,605원으로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10. ~2025.07.21.
-----	---------------------------------	-----------------------------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그 제조·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완구류’를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2, 팩스: 044-201-739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12. ~2025.07.22.
-----	--------------------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신속평가 대상 사업·판단기준·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전화: 044-201-7271, 팩스: 044-201-728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10.
~2025.07.09.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방식과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가칭: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후보지 선정 절차, 예외적 현물보상 기준,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 시 세부 절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공모리츠)에 조성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이 가능한 중소규모 복합지구 규모, 공공주택사업 준공검사 신청 시 의제 관련 서류 제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tel:044-201-4386) (전화: 044-201-4386, 팩스: 044-201-5659)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6.11.
~2025.07.21.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존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대한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 부지가 대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국·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에 적용되는 행위제한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tel:044-201-3747) (전화: 044-201-3747, 팩스: 044-201-5574)

법제처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13.
~2025.07.23.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의신청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전화: 044-200-6741, 팩스: 044-200-687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2025-06-11 발의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5조의2 신설 등)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

2025-06-10 발의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독일·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 법은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여 상장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보수액이 아닌 전체 이사 보수총액 한도만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주주가 이사 보수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보수정책에 대한 주주승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2025-06-11 발의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일명 ‘다크패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다크패턴을 통한 이익 취득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지로 작동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등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체가 수수료 할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당이익 취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34조제1항 신설)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안(민병덕의원 등 37인)

2025-06-11 발의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또한 국제사회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EU·일본 등은 발행·유통 전반에 걸친 인허가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회계 기준 마련 등을 이미 도입함

그러나 국내법상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로,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등록·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공시·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 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2025-06-11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거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최근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할인 적용을 어렵게 하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설계해 소비자 피해와 부당이익 취득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거나 다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자 입장에서 이익을 얻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5-06-11 발의

현행법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대상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징수된 과징금이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쓰이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피해 중소기업이 피해액을 청구하고 수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소송 중 발생하는 비용이나 최종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적 비용 등을 부담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25조의8 신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025-06-12 발의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가맹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높은 인지도와 유명인을 앞세워 마치 ‘성공이 보장된 사업’처럼 보이게 만든 뒤, 실제로는 기대와 다른 매출 구조로 영세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단 한 곳만 운영한 경험이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음. 또 현행법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체결시에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미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운영을 계속하면서도 본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음. 이로 인해 현행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종속적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하고 있도록 했음**.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음**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일정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지게 되고, 이미 가맹한 점주들도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결국, 가맹본부의 규모와 인지도에 걸맞은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정무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2025-06-12 발의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둬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안 제10조 등)**

정무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2025-06-12 발의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싶어도 지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지체 없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등 당초 의도한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2025-06-12 발의

최근 SKT 내부망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음. 이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이 사실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전달받지 못함.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 회사 홈페이지 공지가 올라왔고, 개별 문자 안내는 5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루어졌음. 통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용자가 사태의 심각성이나 향후 예상되는 위험 및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음

이처럼 침해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미흡한 후속 조치가 소비자 불안과 사회 혼란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34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2025-06-10 발의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음.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의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2025-06-12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고객 및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태양광·풍력 보급 목표 상향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나, 현재 투자 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025-06-12 발의

현행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도체산업 등에는 유리한 방식이나 기타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효율성 제고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일본은 전략분야 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제127조 제12항 및 제144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2025-06-09 발의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성 평가결과 적합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로 연구현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폐지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7인)

2025-06-09 발의

2025년 4월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였음

휴대전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취약계층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조차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나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4인)**

2025-06-11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또는 관리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침해사고의 예방과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음. 향후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체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인증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 중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하여는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중대한 위반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사후관리 시 현장심사 강화와 인증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7조, 제47조의8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2025-06-12 발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산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통·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미비하고,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나 품질인증 체계가 부재하여, 기업 간 거래의 신뢰 부족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비식별화 기준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2025-06-12 발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 안전성 등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보완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에 대한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장기적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고, 영국은 2023년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하여 SMR 및 혁신적 원자력 프로젝트의 전 주기를 지원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을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2025-06-12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4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2025-06-1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부 장관’)은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더라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 이 때문에 국민 피해 및 구제와 직결되는 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 (안 제48조의7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1호의3·제12호 삭제)**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2025-06-11 발의

현행법에서는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의 경우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상품을 판매 또는 중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유통 및 거래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여행사에게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2025-06-12 발의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계에 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2025-06-09 발의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처벌 규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등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4항 제1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2025-06-11 발의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전·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커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임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및 기술개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5-06-12 발의

현행법상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관계 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업부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고,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아울러,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KS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인증받은 자가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이 해당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품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2025-06-1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25-06-12 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은 인공지능, 센서, 통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향상, 물류 효율화,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개발 수준에 비하여 부처 간 제도의 중첩, 데이터 기반의 실증·평가·인증 인프라 부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전략적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2025-06-11 발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0인)

2025-06-11 발의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안 제63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025-06-11 발의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신고자가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업·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치폐기물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여 2024년까지 총 122만톤에 달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량 이상의 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제13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5-06-10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의 특성상 위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2025-06-11 발의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등 및 제39조의4 삭제)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2025-06-12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자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통하여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사업의 손익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등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3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6/19(목) 10:00	-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회
		6/20(금) 10:00	-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16(월) 09:30	휴머노이드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의 융합 : 한국의 전략은?	서범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6/16(월) 14:00	(코스닥 3000 유니콘 40) 중소벤처기업 성장방안	민병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7(화) 13:00	유통산업이, 유통노동자가 쓰러진다 : 유통업에서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혜경·이용우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6/18(수) 09:30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강준현·박지원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6/18(수) 10:30	기후테크이니셔티브 2차 토론회 : 신정부 출범과 2035 NDC 수립 방향	위성곤·김성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6/18(수) 13:00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	김성환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6/18(수) 13:30	K-조선 글로벌 미래 초격차 기술확보 토론회	허성무·안도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19(목) 14:00	AI안보, AI산업경쟁력이다!	황정아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자료집 등	6/16(월)	「Data+」 제11호(2025-11호) 발간	국회도서관	
	6/18(수)	「Data & Law」 제30호(2025-5호) 발간		
	6/18(수)	「금주의 서평」 제733호(2025-24호) 발간		
	6/17(화)	「NABO Focus」 제113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9(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2호(2025-12호) 발간	국회도서관	
	6/1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3호(2025-10호) 발간		
	6/11(수)	「금주의 서평」 제732호(2025-23호) 발간		
	6/12(목)	「NABO Focus」 제112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10(화)	금융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발의 - 디지털자산의 본격적인 제도화
6/11(수)	지적재산권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로서 ‘연구·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6/11(수)	에너지·자원	2025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
6/12(목)	소송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준거법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상거소지법 적용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6/13(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5. 28. - 2025. 6. 10.)
6/13(금)	중국	중국 <에너지법> 시행 및 최근 美中 관세 협의가 주는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